

환경부 공고 제2010-244호

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2010년 8월 23일 / 환경부장관

1. 개정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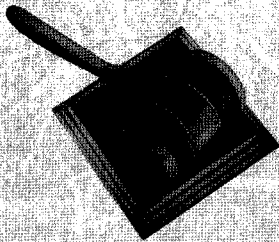
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하고,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영화관, 호텔, 학원, 전시장, PC방 등을 법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(안 제2조)
- 나. 현재 환경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(안 제4조 및 별표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: 생활환경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, 법령마당 → 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환경부 공고 제2010-253호

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

2010년 8월 18일 / 환경부장관

1. 개정이유

국내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하여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승인대상생물자원 종수(총 1,137종)가 적어 효과가 미미

- 국내 생물종(약 10만종) 중 멸종위기종(221종), 수출·입허가대상종(689종) 등을 제외하면 외국인 등이 자유롭게 국내 생물자원 반출 가능

자생생물 중 고유종, 경제적 활용가치가 큰 종 등을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국내 생물자원의 보호필요

2. 주요내용

개정안 : 총 1,540종

- 현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1,137종에서 403종을 추가지정
 - * 신규지정예징(403종) : 곤충류 128종, 거미류 32종, 연체동물 30종, 기타무척추동물 68종, 식물 58종, 해조류 32종, 고등균류 50종, 지의류 5종지

환경부 공고 제2010-249호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2010년 8월 13일 / 환경부장관

1. 개정이유

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·재활용체계가 구축된 유탄유 용기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로 전환하고,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정비 및 명확화(안 제10조제1항 개정)

-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으로 전환된 살충제 용기('09. 12)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
- 조문 정비를 통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조·수입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를 명확히 함

나. 의료용 일회용 주사기를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(안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) 신설)

-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 중으로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중부담 문제 해소

다. 플라스틱제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의 세부 이행방법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(안 제10조 제2항 바목 개정)

-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중인 자발적 협약의 세부 이행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여 명확히 함

라.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 및 청구기간 명시(안 제13조의 2 신설)

- 현재 환경부 예규에 규정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청구 및 그 기간을 법령으로 상향

마. 폐기물부담금 대상을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대상으로 전환(안 제18조 제1호 카목, 제8호, 제9호 신설)

-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·재활용 체계를 갖춘 유탄유 용기, 양식용 부자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품목으로 전환

바.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업무의 권한 위임(제48조제2항10의2 신설)

-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임

사. 전자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마련(안 별표2 개정)

- 지방세법 개정(시행일: '10. 7. 5)으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근거 마련

아.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부담금 경감(안 별표2 비고 5호 신설)

-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업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'12년 분 폐기물부담금까지 50% 감면

자. 폐기물부담금대상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환에 따른 재활용기준 비용 산정(안 별표6)

- 유탄유 용기, 양식용 부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과 관련된 재활용기준 비용 산정(자발적 협약 비용 준용)

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 » 법령·정책 » 법령정보 »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